

9.28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홍보맨은 기자랑 식사도 못하나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정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만들었기 때문에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이 칼럼에서도 ‘김영란법’이라고 지칭하겠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요건을 제외한 것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 그대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예전의 법률에 의해서도 당연히 금지되는 행위였다.

그런데 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을까? 2014년 벤츠 여검사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대법원은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받은 벤츠 자동차를 ‘사랑의 정표’라고 보아 뇌물이 아니라고 보았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당시 언론들은 엄청난 비판을 했고, 여론도 좋지 않았다.

우리 형법상의 수뢰죄(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 한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수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수뢰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혐의자들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이에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그리고 뇌물죄의 두 가지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의 범죄도 계속 발전해 갔다. ‘벤츠 여검사’ 사건도 벤츠를 대가성 없는 사랑의 정표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런데 ‘김영란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 ①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김영란법’은 명백하게 직무관련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금품 수수의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형법상 뇌물이 아닌 대가성 없는 금품도 ‘김영란법’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법의 핵심이다.

언론과 기업 홍보실의 홍보 관행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대해 언론, 기자, 기업 홍보실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기존의 홍보 관행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일단 김영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대상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②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라.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이 법에 따르면 언론사와 언론사의 기자가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기업 홍보실과 언론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실 기업에서 언론홍보를 위해서는 언론사와 접촉하기도 하고, 기자들과 식사도 해야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기자의 해외 시찰 시에 기업 홍보실에서 기자들에게 항공권, 식사,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런 관행은 크게 바뀌어야 한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사와 기자의 경우에도 직무관련 여부, 대가성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김영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 ③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이 법에 사실상 ‘접대’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형태가 다 규제 대상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업 홍보팀에서 기자와 언론사에게 제공하였던 거의 모든 편의 사항이 이 금품 제공에 포섭될 수 있다. 가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할인권이라든지 무형의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법에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시가’에 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외 조항과 구체적인 기준

김영란법은 제8조 3항에서 예외조항을 규정해 놓았다. 이 중 기업의 홍보실이나, 언론사, 기자들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⑥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⑦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⑧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즉 공식적인 행사에서 여러 기자들에게 일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김영란법에서 규제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법 제8조 제3항 2호이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경조사비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고, 그 범위를 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아직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이라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일단 기준을 한번 정해보면, 기자나 언론사가 공식적인 홍보 행사에서 받는 기념품, 홍보용품, 음식물 등의 편의 제공은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해외 행사 때 기자나 언론사가 주최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교통, 숙박 등의 지원이 허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국내 행사를 넘어선 해외 행사에서 기업이 기자나 언론사에게 항공권, 숙박권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범위'를 넘

었다고 보아 김영란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 외에 추가적인 골프 접대나 고가의 식사는 김영란법의 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9월 28일 이후 기업 홍보실과 기자의 관계

앞으로 제정될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다. 한편 법이 실제로 적용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관행대로 접대를 하고, 접대를 받던 관행은 일체 금하는 것이 좋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 아차 하는 순간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고, 김영란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겠다. **KAA**